

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3.1
 개정 2017.3.1.
 개정 2017.10.16.
 개정 2019.9.2.

1장. 총칙

제 1조(명칭)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설계를 통한 전인적 발달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2장 조직

제 3조(구성) 센터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
2. 전임상담원
3. 자문위원
4. 객원상담원

제 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조(전임상담원 등) ① 전임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② 전임상담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본 센터의 상담 및 행정업무를 시행한다.

제 6조(자문위원) ①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자문을 의뢰받은 센터의 사안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시행한다.

제 7조(객원상담원 등) 센터의 상담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① 객원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② 객원상담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본 센터의 상담 및 센터의 요청을 받은 상담관련 업무를 시행한다.

③ 객원상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3장 업무

제 8조(업무)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로·심리 등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
2.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개발
3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
4. 교수 및 교직원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학생상담 컨설팅 및 학생상담 지원 네트워크 운영
6. 기타 학생상담 관련 업무
7. 성희롱·성폭력 상담센터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위원회 관련 업무

4장 상담위원회

제 9조(상담위원회) 상담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5장 계획과 평가

제 10조(계획) ① 센터는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 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센터는 사전 요구조사와 학생 실태조사,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,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센터는 스쿨 및 기타 행정부서의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 11조(평가 및 환류) ① 센터는 재학생 만족도 조사, 학생상담센터 만족도 조사, 개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실적 및 운영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, 사업결과보고서를 상담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차년도 운영에 반영한다.

② 센터는 상담위원회의 최종 사업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개선의견을 각 스쿨(학과)과 관련부서에 공지하며,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6장 재정

제 12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자체예산, 정부지원 사업예산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7장 상담윤리

제 13조(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) ① 본 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본 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 본 센터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상담소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

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은 학생상담센터의 전문 기록으로서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.

8장 기타

제 14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